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2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오현정의원 외 13명 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4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오현정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9.)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하므로 활동보조 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19.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장애인 복지법」 개정(2017. 12. 19.)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며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여, 서비스질 개선을 향상을 통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 조례상에 활동지원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2조의8),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이루고자 함(안 제13조의2).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삭제</p> <p>2. ~ 7.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2. ~ 7. (현행과 같음)</p> <p>8. <u>“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13조의2(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u>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1. <u>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u></p> <p>2. <u>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u></p> <p>3. <u>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u></p> <p>4. <u>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u></p> <p>② <u>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나. 장애인활동지원사 관련 현황

1.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정의

-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¹⁾에 따라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제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²⁾를 시행하는 인력을 말함.

2.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현황

- 서울시 자립생활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17,258명으로 파악됨(19.6.말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개인위생관리 등의 신체활동 지원, 청소, 세탁 등의 가사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등의 사회활동 지원등임.

구 분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내용	단가(시간, 회)
활동보조	활동보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 12,960원 ■ 야간·공휴일 : 19,440원 (22시~익일 06시)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3.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현황

- 2019년 활동지원사 시간당 단가는 9,720원으로 최저임금(8,350원)보다 높으나, 주휴수당이 미지급(월35시간)됨.
 - 최저임금 : 월 1,745,150원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 활동지원사 임금 : 월 1,691,280원(주휴수당 제외시 월 174시간)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월 1,821,280원(단가 8,839원)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요건이 되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나, 활동지원사의 근무특성상 주휴 및 연차수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법정수당

- ①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주휴수당=1일 근로시간×시급)
- ②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1주 15시간, 1개월 60시간 이하 근무자는 연차 미발생
 - ※ 명절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등 기타 수당은 사용자-근로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상호 협의하에 정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 없음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근로감독관 -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관련 서울연구원 상시 용역과제를 진행중이며(19년 7월~10월) 이를 토대로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계획에 활용한 계획임.

다. 조례 개정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장애인자립지원과)는 원안 동의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음.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질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62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오현정, 이광호, 이영실,
이승미, 김화숙, 김경영,
이은주, 송아량, 이병도,
김용연, 김상훈, 김소양,
김혜련, 봉양순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9.)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이 미비하므로 활동보조 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사업등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삭 제</p> <p>2. ~ 7.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2. ~ 7. (현행과 같음)</p> <p>8. <u>“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 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u>제13조의2(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u>1.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u></p> <p><u>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u></p> <p><u>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u></p> <p><u>4.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u></p> <p><u>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다. 비용추계 전제

-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16,999명을(2019.1월말 기준)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후 인원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역량강화 교육은 각 활동지원사 당 2년주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사업 지침상 활동지원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주기적으로 활동지원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연2회이상의 보수교육과 연1회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권고하고 있음. 위탁교육시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역량강화 교육 비용은 48,000원으로 전제함(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산출단가)

라. 비용추계 산식

-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비용 = 2,040,000천원
 -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비용
 - = $\sum_{i=1}^5$ (연간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비용)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서울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지원비용
 - = 지원단가 × 인원수
 - = 48,000원 × 8,500명
 - = 408,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